

『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한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리, 기념사업 진흥 등 업적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-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, 민족중흥과 문화 예술발전의 자취를 길이 보존함과 그 뜻을 널리 알리며, 향토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장려(안 제3조).
-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(안 제4조).
-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위탁 및 준용(안 제5조 ~ 안 제6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, 제3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,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및 활동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시책 및 육성·보호 등 시장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규정을 명문화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